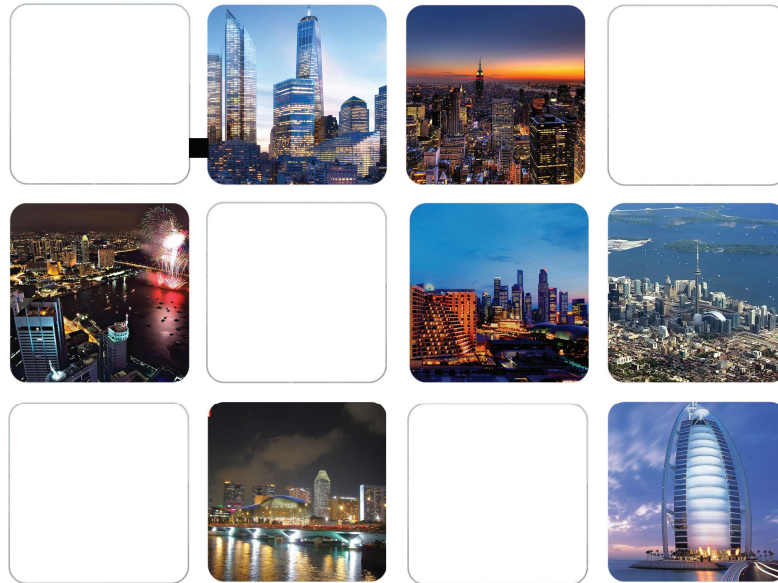


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세무사김선희

홈페이지: www.jsstar.co.kr
전화 : 044-867-8430, 868-8432
팩스 : 044-868-8433

사업자의 장부작성(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서비스



지성세무회계사무소

Table of contents

- ▶ I. 부가가치세 신고
- ▶ II. 종합소득세 신고
- ▶ Ⅲ. 회계장부의 작성
- ▶ IV. 기타 세무지식
- ▶ V. 업무의뢰시 준비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

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current tax risk)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potential tax risk)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sustained growth)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회계장부의 작성

4. 기타 세무지식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 30	6개월간 사업실적	7.1 ~ 7.25
	제2기 7.1 ~ 12.31	6개월간 사업실적	1.1 ~ 1.25(next year)
간이과세자	1.1 ~ 12.31	1년간의 사업실적	1.1 ~ 1.25(next year)

-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½을 예정고지합니다.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
-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이 결정 고지되며, 신고불성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의도치 않은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current tax risk)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potential tax risk)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sustained growth)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회계장부의 작성

4. 기타 세무지식

▶ 종합소득세 신고

-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의 합법적인 절세 및 의도치 않은 세무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장부의 비치 및 기장(1/2)

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current tax risk)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potential tax risk)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sustained growth)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회계장부의 작성

4. 기타 세무지식

▶ 장부의 비치 및 기장

-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3. 장부의 비치 및 기장(2/2)

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current tax risk)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potential tax risk)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sustained growth)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회계장부의 작성

4. 기타 세무지식

▶ 장부의 비치 및 기장-계속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적용되며, 사업상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장부 기장시 10년간 공제) 각 종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각 종 세제가 장부를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법과 관련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성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세무회계사무소는 지속적인 연구와 축적된 노하우로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준높은(high qualit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세무지식(1/2)

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current tax risk)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potential tax risk)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sustained growth)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회계장부의 작성

4. 기타 세무지식

▶ 적격증빙의 수취

- ▶ 세금계산서
- ▶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 ▶ 신용카드매출전표(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 연동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수취)
- ▶ 현금영수증
- ▶ 지로영수증
- ▶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청구서(통신요금 등)
-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무지식(2/2)

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

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current tax risk)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potential tax risk)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sustained growth)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회계장부의 작성

4. 기타 세무지식

▶ 원천징수

- ▶ 원천징수제도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 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
 - ▶ 기타 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연도 2월말일
-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 업무 의뢰시 필요한 자료

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

▶ 기본자료

- ▶ 사업자등록증
- ▶ 상가 등 임대차계약서
- ▶ 회계프로그램(더존) 백업파일
- ▶ 기존 세무대리인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해제(사업자가 직접 하여도 무방)
- ▶ 기존 세무대리인 하드카피 장부(영수증 철 등)
- ▶ 대표자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장전화번호(세무대리 등록시 필요)

▶ 정기적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자료

-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조회 가능)
- ▶ 신용카드 등 매출집계내역(나이스정보통신 등 van사에서 기간별 자료 수령 가능)
- ▶ 신용카드 등 지출(매입)내역 - 엑셀파일 가능
- ▶ 경비지출 관련 영수증 등

▶ 주의 사항

-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
- ▶ 물품 등 매입시: 3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결재(또는 세금계산서 수령)
- ▶ 가능하면 비용 지출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사업용계좌에 연동된)

www.jsstar.co.kr



지성세무회계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2 해피라움2 4층 406호
044-867-8430, 868-8430

지성세무회계사무소는 축적된 전문지식과 오랜 실무경험
을 통하여 고객의 재무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